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 중 “제102조의3, 제102조의4”를 “제102조의3”으로, “별표 11의5”를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로,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을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